



보도시점 2025. 10. 27.(월) 12:00 / 배포 2025. 10. 27.(월) 08:30
<10.28.(화) 조간>

핵심부품의 공급을 거절하게 한 이오시스템 제재

- 방향포경 계수기 조립체 독점 생산자에게 공급을 거절하도록 해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주식회사 이오시스템(이하 ‘이오시스템’)이 방향포경*의 핵심부품인 계수기 조립체**를 국내에서 독점 생산하는 주식회사 신보(이하 ‘신보’)에게 자신의 경쟁 사업자를 대상으로 계수기 조립체를 공급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중지명령, 향후 행위금지명령, 통지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 대포의 목표를 조준하여 포신의 방향을 결정할 때 사용되는 장비

** 방향포경의 방위각을 계수하여 이를 표시해 주는 장치로 방향포경의 핵심부품

2022년 6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식회사(이하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 방향포경 입찰 과정에서, 이오시스템은 신보로 하여금 경쟁업체인 주식회사 우경광학(이하 ‘우경광학’)에게 계수기 조립체를 공급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결과 이오시스템이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하여 방향포경 공급자로 선정되었다.

* 2011년 신보의 계수기 조립체 국산화 개발 과정에 이오시스템이 함께 참여하였으며, 이후 양사는 “신보가 계수기 조립체 공급, 양도, 외주생산 등의 경우 이오시스템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계약을 체결(2013. 7. 11.)

공정위는 이오시스템의 거래거절을 하게 한 행위(신보의 우경광학에 대한 ‘계수기 조립체 공급 여부’ 문의에 대한 부동의)가 신보와의 계약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방향포경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사실을 신보 및 계수기 조립체 수요자들에게 통지하도록 하였다.

과거 방위산업은 제도적으로 특정 방산업체가 특정 방산물자 생산을 전담하는 구조였으나, 2008년을 마지막으로 해당 제도는 폐지되고 방산업체를 추가로 지정하여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조치는 이러한 제도개선의 취지에 반하여 경쟁 사업자에 핵심부품이 공급되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하였다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방산업체 추가 지정 관련 규정

「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 <방위사업청 훈령 제89호, 2009. 1. 9.>
제13조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이미 지정된 방산업체가 있는 방산물자에 대하여 지정된
방산업체 이외의 업체가 방산업체 지정 신청을 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방산진흥
국장)에게 (중략) 협의요청을 할 수 있다
제16조 ① 방산진흥국장은 (중략) 당해 업체가 방산물자의 생산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방산업체 추가 지정을 검토한 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제한경쟁이 이루어지는 구조인 방위
산업 분야에서도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
하고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예정이다.

<붙임> (주)이오시스템의 거래거절을 하도록 한 행위에 대한 건 세부 내용

담당 부서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	책임자	과장	류용래 (02-2110-6120)
		담당자	사무관	안영제 (02-2110-6124)



불임

(주)이오시스템의 거래거절을 하도록 한 행위에 대한 건 세부 내용

1

관련 제품

- 이 사건 관련 제품인 계수기 조립체는 방향포경의 방위각을 계수하고 이를 표시해 주는 장치로 방향포경의 핵심 기능 부품이다.
- 해당 계수기 조립체는 미국에서 최초 개발한 것을 방위사업청의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지원 사업을 통해 신보가 국산화하였다.
- 해당 계수기 조립체가 사용된 방향포경은 목표를 조준하여 포신의 방향을 결정할 때 사용하는 도구로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생산하는 K-9 자주포와 K-55 자주포에 적용된다.

〈계수기 조립체와 방향포경, 자주포의 관계〉



2

기초 사실

- 2011년 계수기 조립체 국산화 개발 당시 유일한 방향포경 생산업체였던 이오시스템은 계수기 조립체 성능 시험 등에 참여하였다.
- 국산화가 완료될 무렵인 2013년 7월 우경광학이 방향포경 생산업체로 추가 지정되었고, 이오시스템은 같은 달 11일 신보와 제삼자에 대한

계수기 조립체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의 특약 조건을 삽입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2. “갑”과 ‘을’이 공동 개발한 계수기 조립체 부품에 대하여 “을”은 “갑”的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갑” 이외의 제3자에게 본 계수기 조립체 부품에 대한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판매 또는 양도, 위임, 위탁, 하도급, 외주생산,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기타 어떠한 처분행위도 할 수 없다.

- 우경광학이 2014년 방위사업청에 대한 방향포경 납품을 위해 계수기 조립체 공급을 요청했을 때 이오시스템이 최초에는 거절 의사를 표시했으나 결국 공급이 이루어져 지속적으로 방향포경 사업을 영위하였다.
- 2020년 6월 이오시스템은 신보에 2013년의 합의 내용을 재확인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서명을 요구하였다.

1. 목적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개발 완료된 부품의 물품공급에 대한 기 합의 사항을 합의서로 재확인하고자 함.

2. 확인 요청

첨부된 합의서 내용을 검토하시고 합의서에 서명후 재발송 바랍니다.

(3) “**동** 부품”의 제 3자 공급 관련 구체적 합의 내용

“**동** 부품”에 대한 “갑”, “을”的 공동개발 취지를 고려하여 “을”은 방위사업청 직납을 포함하여 제3자에게 공급요청을 받은 사실과 그 내용을 “갑”에게 자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갑”的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동** 부품”에 대한 공급뿐 아니라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판매 또는 양도, 위임, 위탁, 하도급, 외주생산,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기타 어떠한 처분 행위도 할 수 없음을 재확인 한다.

3

법 위반 내용

- 2022년 6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수출 사업을 위해 방향포경 생산업체들에 방향포경 견적 제출을 요청하여 우경광학이 신보에 계수기 조립체 견적을 요청하자, 이오시스템은 공급 불가 방침을 정하였고 신보는 이에 따라 계수기 조립체 공급이 불가능하다고 회신하였다.

- 우경광학은 계수기 조립체 공급자를 확보하지 못하여 방향포경 견적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이오시스템이 단독으로 방향포경 공급자로 선정되었다.
- 이오시스템은 2023년 1월 우경광학의 기존 납품분 A/S용 계수기 조립체 공급요청에 대해서도 공급하지 말라고 하였고 신보는 이에 근거하여 판매 불가를 회신하였다.

4

적용법조 및 조치내용

- (적용법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1호 (거래거절을 하게 한 행위)
- (조치내용) 공정위는 이오시스템에 거래거절을 하도록 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명하고, 신보 및 계수기 조립체 공급을 요청하였던 사업자들에게 위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였다.

5

의의 및 향후 계획

- 이번 조치는 방산업체로 지정되어야 방산물자를 생산할 수 있어* 참여 기업이 한정되는 특수성이 있는 방위산업에서, 경쟁 사업자에 핵심부품이 공급되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방위사업법」 제35조 ① 방산물을 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기준과 보안요건 등을 갖추어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방산업체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 이는 과거 특정 방산물자의 생산을 특정 방산업체에 맡기던 것을, 방산업체를 추가로 지정하여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방위 사업법」 제정의 취지에도 반한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1 참조)

- * 「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지식경제부 훈령 제28호, 방위사업청 훈령 제89호)
제13조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이미 지정된 방산업체가 있는 방산물자에 대하여 지정된
방산업체 이외의 업체가 방산업체 지정 신청을 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방산진흥국장)
에게 (중략) 협의요청을 할 수 있다.
제16조 ① 방산진흥국장은 (중략) 당해 업체가 방산물자의 생산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방산업체 추가 지정을 검토한 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 앞으로도 공정위는 특수한 사정으로 제한경쟁이 이루어지는 구조인
방위산업 분야에서도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1

방산업체 지정 제도 변천사

- 1983년 도입된 전문화·계열화 제도^{*}는 특정 업체에 특정 무기 생산을 전문적으로 맡기는 방식으로 기존 업체에 독점적 지위를 보장하였다.

* 구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 ① 정부는 방위산업을 합리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개발하거나 기술도입하여 생산하고자 하는 물자 또는 관련업체를 전문화하거나 계열화할 수 있다.

- 이는 초기 방위산업 성장에는 유효하였으나, 업체가 기득권에 안주해 비용 절감·기술개발에 소홀히 하는 등 경쟁력 저해 문제가 발생하였다.

- 2006년 방위사업청이 신설되고 「방위사업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전문화·계열화 제도는 유예기간 끝에 2008년을 끝으로 폐지^{*}되었다.

* 「방위사업법」 부칙 <법률 제7845호, 2006. 1. 2.> 제6조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화·계열화된 업체 및 물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 2009년 방산업체 추가 지정 규정이 정비^{*}되었고, 2012년에는 방산 물자의 가격·품질 경쟁력 강화를 이유로도 추가 지정이 가능^{**}하게 되는 등 방위산업에도 시장경쟁체계가 도입되었다.

* 「방위산업물자 및 방산업체 지정 규정」 <방위사업청 훈령 제89호, 2009. 1. 9.> 제13조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이미 지정된 방산업체가 있는 방산물자에 대하여 지정된 방산업체 이외의 업체가 방산업체 지정 신청을 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방산진흥국장)에게 (중략) 협의요청을 할 수 있다.

제16조 ① 방산진흥국장은 (중략) 당해 업체가 방산물자의 생산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방산업체 추가 지정을 검토한 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 「방위산업물자 및 방산업체 지정 규정」 <방위사업청 훈령 제174호, 2012. 4. 24.> 제16조 ②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방산업체 추가 지정을 할 수 있다.
6. 기타 군사전략, 후속군수지원 및 방산물자의 가격·품질 경쟁력 강화 등의 필요에 따라 방산업체 추가 지정이 필요한 경우

참고2**(주)이오시스템 일반현황**

(연도말 기준, 단위: 백만 원)

연도	자산총액	부채총계	매출액	당기순이익	설립일
2022	112,142	83,738	58,226	560	
2023	107,249	73,456	108,421	5,383	
2024	114,586	74,837	90,430	6,158	1979. 3. 6.